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417호

나. 발 의 자 : 이효원 의원 등 26명

다.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라.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대문 암행단 사업 등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의 '찬조금' 행태는 여전히 음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앞장서고,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 내 청렴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금품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6. 2. 20. ~ 2. 24.(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이효원 의원 등 26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417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음.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음.<sup>1)</sup>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아왔으며, 특히 운동부 운영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부패경험률과 경험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1]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점수(등급) 추이



1) 서울시교육청 청렴도평가 2등급...전체 공공기관 평균 상회(2025.12.28. 연합뉴스)

[표-1] 최근 3년간 청렴체감도 평가 중 '운동부 운영 외부체감도' 평가2)

업무분야	연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100점 만점)	부패경험(감점요인)	
				부패경험률(%)	부패경험빈도(회)
운동부 운영	2022	78.6	93.6	1.85	0.042
	2023	75.9	90.5	2.22	0.044
	2024	75.6	90.6	3.57	0.098

○ 또한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불법찬조금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이에 따른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운동부 운영 분야의 청렴도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표-2] 최근 3년간(2023~2025)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

연도	급	계약구분	종목	징계	사유
2023	고	전임코치	양궁	감봉	폭력(폭언), 별도계좌 운영, 장비 판매
	고	일반코치	야구	감봉3개월	학교운동부 운영 소홀(동계전지훈련 승인 내용 미준수, 학교회계 절차 미준수)
	고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감봉1개월	학생선수에 대한 욕설, 명절선물 수수 등
	고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견책	선물 수수 등
	고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정직3개월	금품수수(현물, 향응 등), 승인받지 않은 입학예정자 포함 전지훈련 실시, 폭력행위, 사전스카우트 등
	고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정직1개월	금품수수(금품, 향응 등) 등
	중	전임코치	태권도	경고	학부모간 학생간식비 각출 및 입학 예정 학생선수(전지)훈련 참가
	고	일반코치	야구	경고	스승의 날 선물 수수, 설날 명절음식 및 세배돈을 받아 전달함
	고	일반코치	야구	주의	스승의 날 선물 수수, 설날 명절음식 및 세배돈을 받아 전달함
2024	고	전임코치	복싱	감봉1개월	부정청탁 관련 부적절한 언행
	고	일반코치	축구	정직1개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소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정직3개월	미인정 보조코치 부정 채용, 학부모 불법 찬조금 조성, 접대 및 향응
	중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견책	미인정 보조코치 부정 채용, 학부모 불법 찬조금 조성, 접대 및 향응
	고	전임코치	축구	해고	축구부 운영비, 훈련비, 장학금 면제를 조건으로 개인계좌로 입금 받음
	고	일반코치	배구	정직1개월	학부모에게 금품 수수
	초	전임코치	축구	정직3개월	복종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품위손상 등
	초	일반코치	축구	견책	명령 복종 의무 위반, 허위체험학습 참여 묵인
2025	고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견책	불법찬조금 조성 묵인, 사설업체 유착
	고	일반코치	아이스하키	견책	불법찬조금 조성 묵인, 사설업체 유착
	고	전임코치	복싱	주의	회계관리 부적정
	초	전임코치	축구	정직3개월	회계비위, 학교 내 불법 숙직, 향응제공(음주, 식사), 무허가 지도자 지도허용(자녀)

2) 2025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연도	급	계약구분	종목	징계	사유
	초	전임코치	축구	견책	청렴의무 및 성실의의무 위반(불법자금 조성 및 편의제공, 복무위반 등
	고	일반코치	야구	주의	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
	고	일반코치	야구	주의	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
	고	일반코치	야구	주의	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
	고	일반코치	야구	주의	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
	고	전임코치	농구	경고	청탁금지법 위반
	중	전임코치	레슬링	해임	청렴의무 및 성실의의무 위반(불법자금 조성 및 편의제공, 복무위반 등
	초	전임코치	배구	정직3개월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초	전임코치	축구	정직1개월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 위반
	초	전임코치	축구	정직2개월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학교회계 지침 위반
	초	전임코치	에어로빅	해고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렴의 의무 위반, 불법자금 조성 겸직절차 위반 등
	중	전임코치	하키	정직1개월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금품 및 향응 수수
	초	전임코치	유도	정직1개월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렴의 의무 위반, 복무위반 및 불법자금 조성, 학교회계지침 조성 등
	초	전임코치	축구	해고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 위반
	초	일반코치	축구	감봉1개월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 위반
	초	일반코치	축구	견책	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 위반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5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sup>3)</sup>를 인용하여 “금품등”의 정의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를 규정하고 있음.

- 인용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동 법률에서는 “금품등”은 단순한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등 재산상 이익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학교도 이에 포함되어 동 법의 적용을 받는바<sup>4)</sup>, 동 개정조례안이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의 편의성 및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청렴 문화 조성(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는 금품 등의 요구·제공에 대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제1항) 학생선수 및 학부모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제2항), 학생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 실시와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제3항) 및 학교운동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제4항)를 규정하고 있음.
-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동 법의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반면, 학생선수 및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신고 의무는 부과되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체계에 맞추어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는 금품 등의 요구·제공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9조는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의 적용범위를 공직자 뿐만이 아닌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sup>5)</sup>
- 그러나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신고 대상의 적용범위를 학교운동부지도자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보다 신고대상이나 절차를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정한 의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본 조항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서 정한 신고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신고 대상의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또한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행정관 리담당관-2277, 2026.2.20.)

○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부  
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sup>6)</sup>,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7)</sup>.

[표-3] 최근 3년간(2023~2025) 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 현황

연번	부서	연수일시	장소	대상	참석인원	내용	방법
1	체육건강예술포교과	2023.12.11.	상문고	운동부 학부모	331	운동부 관련 청렴교육	집합
2	체육건강예술포교과	2024.11.25.	디노체 컨벤션	운동부 학부모	1,400	운동부 관련 청렴교육	집합
3	체육건강예술포교과	2025.7.15.	이화외고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1,200	운동부 관련 청렴교육	집합
4	체육건강예술포교과	2025.7.~8.	별도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1,000	찾아가는 운동부 학부모 교육	집합
5	체육건강예술포교과	매년 4월경	별도	운동부 지도자	680	운동부 운영 안내	집합 또는 온라인
6	체육건강예술포교과	매년 8월, 1월	별도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1,000	운동부 운영 컨설팅 및 점검	대면
7	감사관	연중	카카오톡		2,726	불법찬조금 관련 청렴소식 배포	카카오톡
8	감사관	연중	카카오톡		2,706	불법찬조금 관련 청렴소식 배포	카카오톡
9	감사관	2025.1.17.	가정통신문	교직원 및 학부모	-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10	감사관	연중	가정통신문	운동부 학부모	-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및 관련 지침<sup>8)</sup> 등에 따라 학교 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과 제4항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을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매년 발행, 체육건강예술포교과),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매년 시행, 감사관)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정책 의지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19조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동 조례안은 청렴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청렴도 수준과 특히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완화된 규정으로 두기 보다는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 교육·연수 실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또한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관계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

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